제32회

## 메가랜드**沙** 종로캠퍼스 (2021년) **기본과정 [2주차]**

상담 🏗 02) 2135-1806

## 공인중개시법령 및 실무



- 0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. (제18회) (0, X)
- 02.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'5년'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. (제30회) (0, X)
- 03.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'5년'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. (제22회) (제27회변형) ( 0, X )
- 04.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국산업관리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, 예외적으로 시·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. (제22회 변형) (0, X)
- 05. 시·도지사'는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 일부터 '1개월'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. (제20회)(제27회) (0, X)
- 06.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` 대여란,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'알면서'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, 자격이 취 소되고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. (제20회)(제26회)(제27회) (0, X)
- 07.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(제23회) (0. X)
- 08.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명칭을 '부동산뉴스', 그 직함을 '대표'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다. 라도,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. (제24회) (0, X)
- 09.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사항은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된다. (제28 회) (0, X)
- 10.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. (제27회 변형) (0, X)
- 11.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,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제 27회 변형) (0, X)

- 12.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 (제27회) (0, X)
- 13.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(제30회) (0, X)
- 14.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, 등록신청일전 1년 이내에 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 (제24회, 제27회 변형) (0, X)
- 15.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 (제26회) (0, X)
- 16.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. (제 24회)(제21회) (0, X)
- 17.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,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. (제26회) (0, X)
- 18.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,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 (제25회) (0, X)
- 19. 시·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,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·장소·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 (제27회) (0, X)
- 20.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(제29회) (0, X)
- 21.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 (제28회) (0, X)
- 22. 「건축법」상의 가설 건축물대상에 기재된 건축물에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. (제22회) (제24회) (0, X)
- 23.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, 대표자를 '포함'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. (제22회)(제31회) (0, X)
- 24.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. (제21회) (0, X)

- 25.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. (제31회) (0, X)
- 26.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. (제29회) (0, X)
- 27.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 '할 수' 있다. (제27회 변형) (0, X)
- 28.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. (제27회) (0, X)
- 29.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. (제22회 변형) (0, X)
- 30.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'5년'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등록의 결격사유 에 해당한다. (제23회 변형) (0, X)
- 31.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. (제19회)(제22회)(제23회) (0, X)
- 32.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. (제23회) (0, X)
- 33. 6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. (제20회) (0, X)
- 34. 업무정지 사유 '발생' 당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.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중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. (제21회) (0, X)
- 35.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은 중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. (제24회) (0, X)

♥수고하셨습니다^^

## ♥ 2021년 필승합격입니다!!!~~~^^\*♥

```
01-X (자격취소+3년, 부정행위+5년 이외의 자들은 모두 시험응시하여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다) //
02-0 //
03-X (3년) //
04-X (시험시행은 시`도지사가 워칙이며,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다) //
05-0 //
06-0 //
07-X (공인중개사자격증은 시`도지사가 교부한다) //
08-X ('대표'라는 용어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(판례) //
09-0 (손해배상, 자격취득, 보수변경,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다) //
10-X (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된다) //
11-X (7명이상 11명이하) //
12-0 //
13-X (위원장이 미리 지명해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) //
14-X (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) //
15-X (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) //
16-0 //
17-X (연수교육의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다) //
18-0 //
19-X (2년되기 2개월전까지 통지해야 한다) //
20-0 //
21-X (이중소속에 해당하므로, 소속된 상태에서는 등록을 할 수 없다) //
22-X (가설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없다) //
23-X (대표자를 '제외'하고도 임원(사원)의 3분의 1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) //
24-0 //
25-X (중개사무소는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으로 확보할 수도 있다) //
26-0 //
27-X (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므로, 등록을 취소 "하여야" 한다) //
28-0 //
29-0 (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, 등록을 할 수 없다) //
30-X (3년) //
31-0 //
32-X ("이 법"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300만원이상 받아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) //
33-0 (자격정지는 그 기간동안 결격에 해당된다) //
34-0 //
35-0 //
```

## ♥(다음카페) 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♥